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인천광역시
- 제조사·공급사 : (주)베이넥스
- ※ 대 상 장 비 : HP계열서버 25대 및 스토리지 3Par 포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33,0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7년 11월 24일

발주기관명

인천광역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W동1209-1212호(당산동4가, 당산SK VI센터)
주식회사 베이넥스
대표이사 연 광 흡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 제조사·공급사 : (주)베스트케이에스
- ※ 대상장비 : IBM 계열서버 8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37,000,000원 (VAT포함)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7년 11월 일

발주기관명

인천광역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5
가산디지털엠피아이어 502호
(주)베스트케이에스
대표이사 김 교 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 제조사·공급사 : (주)엔키아
- ※ 대상장비 : Omniworker (SMS/NMS:서버/네트워크 모니터링)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급3,96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7년 11월 일

발주기관명

인천광역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107-81-66898

주식회사엔키아 이선진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광교로 660
유스페이스1, B동:0층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 부가통신업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 제조사·공급사 : 크로니아이티
- 대상장비 : 방화벽, 웹방화벽, IPS, VPN 등 보안장비 일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8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9,8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7년 11월 24일

발주기관명

인천광역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크로니아이티 (인)

